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 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백혜련·신동근·조승래

김병욱 • 박광온 • 권칠승

박 정・안호영・김민기

박완주 · 김영주 · 김철민

박홍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20. 1. 14. 공포, 7. 15. 시행)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 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,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 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」(의안번호 제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"국세청장"을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국세 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	
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제사법위원회	2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
	관에 속하는 사항
<u>라.</u> ~ <u>사.</u> (생 략)	<u>마.</u> ~ <u>아.</u> (현행 라목부터 사
	목까지와 같음)
3. ~ 17. (생 략)	3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	②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	
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	
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	
인사청문회를 연다.	
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	1
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	
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	
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 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 회 위원장, 국세청장, 검찰총 장, 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한국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 또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 자

2. · 3. (생략)

③ ~ ⑥ (생 략)

고위공직자범죄수
<u>사처장, 국세청장</u>
2.・3. (현행과 같음)

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